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4호 2016년 8월 pp.63~91

한국세무학회

외부감사인의 노력과 조세절감 성향간의 관련성

배성호* · 오광욱**

<요 약>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 활동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 또는 초과감사투입시간으로 측정된 감사노력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직관적으로 기업가치의 관점에서 조세회피는 기업자원의 유출을 억제하므로 유리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조세회피를 위해 필연적으로 경영자에 의한 정보불균형이 야기되었으며, 이를 통한 대리인 문제가 가중되었다(Chen and Chu 2005 ; Hanlon and Heitzman 2010 ; Kim et al. 2011). 이러한 조세회피의 부정적인 속성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증대시켜 감사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회계감사의 감시기능을 고려한다면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가 증대되지 않게 자신의 노력을 투입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자유수입제하에서 감사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한다면 외부감사인은 경제적 유인으로 인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다. 기업의 조세회피활동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경제적 유인관점과 조세회피의 부정적 속성 관점에 따라 감사노력의 결과가 다를 것이라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실증한다.

실증분석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898개(기업/년)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4가지 조세회피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할수록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감사의 감시기능이 조세회피와 관련된 감사인의 경제적 유인과 상충되었을 때 감사인이 경제적 유인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최근 지속적인 감사보수하락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회계법인의 세무부문 매출비중이 증대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외부감사인이 조세회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 판단된다.

<주제어> 조세회피, 감사시간, 초과감사시간

*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shobae@knu.ac.kr, 주저자

**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경영학부 부교수, avnini92@korea.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5년 12월 31일

1차수정일 2016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17일

I. 서 론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corporate tax avoidance*) 활동에¹⁾ 대해 외부감사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함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 또는 초과감사투입시간으로 측정된 감사노력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직관적으로 조세회피는 기업에게 세금납부라는 현금유출의 억제를 통하여 직접적인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되므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분명 유리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Hanlon and Heitzman 2010). 그러나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조세회피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는 경영자이며, 경영자는 항상 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과 대리인 문제를 야기하는데, 특히 주주와 경영자간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조세회피 활동은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Jensen and Meckling 1976 ; Chen and Chu 2005). 또한 경영자는 성공적인 조세회피 전략수행을 위해 기업의 정보환경을 임의로 불투명하게 하여 감독기관 등 외부로부터 세부적인 전략노출을 최대한 방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때로는 조세회피라는 명목으로 가중된 임의적인 정보불균형을 자신의 사적편익추구(*rent-diversion*) 유인과 결합시켜 조세회피행위를 경영자 부정(*fraud*)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Desai 2005 ; Dhaliwal et al. 2011).

회계감사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세회피의 부정적 속성은 고유위험(*inherent risk*)과 통제위험(*control risk*)의 수준을 높여 감사위험(*audit risk*)을 증대시킬 수 있다. 즉, 조세회피가 증가한다면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경영자의 회계추정치에 대한 재량성이 커지며, 조세회피를 감추기 위해 복잡하고 모호한 거래가 증가하여 이익의 질이 감소하므로(Frank et al. 2009 ; Balakrishnan et al. 2011) 고유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영자의 임의적인 기업정보환경의 개입과 대리인 문제로 야기된 경영자의 사적편익추구 유인은 기업의 내부통제제도를 우회할 가능성을 높임으로 통제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회계감사 본연의 감시기능(*monitoring*)을 고려한다면, 조세회피로 인한 부정적 속성이 감사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가 증대되지 않게 자신의 노력을 투입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유수임제 체제하에서 외부감사인들은 수익성 증대를 위해 본연의 감시기능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기타 비가격 및 가격요소를 통한 경쟁자와의 차별화에도 노력한다(Mayhew and Wilkins 2003 ; Dunn and Mayhew 2004). 조세회피의 관점에서 이러한 차별화를 해석한다면 감사업무 수행 중 지득한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에게 조세회피에 유리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투입할 것이라 예상된다. 왜냐하면 외부감사인은 고객회사와 중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업의 조세회피(*corporate tax avoidance*)의 개념은 조세회피와 관련한 대다수의 선행연구(Dyreng et al. 2008 ; Hanlon and Heitzman 2010)에서 정의한 개념에 따른다. 이에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합법적인 절세행위와 불법적인 탈세행위를 광범위하게 모두 포괄하는 ‘명시적 세금의 감소(*reduction of explicit taxes*)’를 위한 행위라 정의한다.

은 관계를 유지할 유인이 있으며, 이는 외부감사인의 수익성과 직결이 되기 때문이다(Fiolleau et al. 2009). 따라서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외부감사인이 견지해야 할 감사업무 본연의 감시기능과 피감사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유지유인이 조세회피활동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실증함으로써 조세회피활동에 있어 감사인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거래소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2,898개(기업/년)의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할수록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감사과정에서 지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하여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유리한 역할을 한 것이라 해석이 되며, 나아가 감사업무로 인해 습득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조세회피로 전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가분석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을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게 세무관련 서비스를 회계감사와 동시에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양분하여 분석해보았다. 결과 외부감사업무와 세무관련 업무를 동시제공하는 표본에서는 조세회피와 감사노력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으나, 외부감사업무만 제공하는 표본에서는 양자간의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즉,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에게 이미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피감사회사의 세무관련 내용에 대해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여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증대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감사대상 회사에게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감사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감사노력을 증가시키에 따라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은 감사에서 얻은 지식으로 고객회사와의 관계개선 및 추가업무수임을 위해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하여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증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결국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와의 우호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감사의 감시기능이 조세회피와 관련된 감사인의 경제적 유인과 상충되었을 때 감사인이 경제적 유인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최근 감사업무의 저가수임화 현상으로 인해²⁾ 감사인이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피감사 회사에 대한 비감사서비스 업무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회계법인의 세무관련 업무의 수임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³⁾, 대표적인 비감사서비스 업무인 세무자문업무와 외부감사인과의 관련성은 반드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 전략에서 외부감사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한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 판단된다.

2)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물가지수를 반영한 회계사 1인당 감사보수는 1억 5,2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약 49% 감소하였다.’ 황인태 회계학회장 “감사보수 반토막… 고품질 감사 어렵다”. 한국경제. 2015. 8. 5.

3) 회계법인들 세무부문 수익 비중 커져. 파이낸셜 뉴스. 2015. 7. 28.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의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관련된 선행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한다. 제 III 장에서는 연구모형 및 변수의 측정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의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며, 제 IV 장에서는 연구표본 및 기술통계를, 제 V 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 및 본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위한 추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VI 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가설의 설정

1.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주제는 기업의 조세회피와 외부감사인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조세회피의 속성과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가. 조세회피

직관적으로 조세회피로 인해 기업이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세금을 줄여 현금유출액을 감소시킨다면, 최소한 절약되는 기업자원의 유출액 만큼 기업가치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직관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Slemrod(2004)는 경제학의 관점에서 개인과 기업의 주주간에는 위험회피도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개인의 조세회피 관점과 다르며, 반드시 대리인(agency)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Chen and Chu(2005)의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에 내재해 있는 비대칭적인 경영자의 보상체계를 지적하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로 인해 기업의 조세회피행위가 효용손실(efficiency loss)을 야기하므로 조세회피의 효익이 전적으로 기업가치와 연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실증연구의 결과 또한 이러한 이론적 가능성을 지지한다. Desai and Dharmapala(2006)는 상대적으로 지배구조가 약한 기업군에서 경영자의 성과급 보상비율과 조세회피와의 유의한 음(-)의 관계를 관측함으로써 경영자가 반드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조세회피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Desai and Dharmapala(2009)의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조세회피가 기업가치를 유의하게 증대시키지 못하나, 지배구조가 양호한 경우 조세회피가 기업가치를 유의하게 증대시킴을 확인하였다. 국내연구로 고윤성 외(2007)의 연구에서는 경영자지분율을 근거로 기업을 소유자지배기업과 경영자지배기업으로 구분한 후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는데, 실증분석 결과 소유자지배기업이 경

영자지배기업에 비해 기업자원의 유출을 막기 위해 조세회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영자는 기업가치의 증대를 위해 항상 조세회피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강정연과 고종권(2014)의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에 내재해있는 비세금비용(non-tax cost)에 초점을 두어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우리나라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한 결과, 조세회피와 기업가치는 음(-)의 관계로 나타나 조세회피에 내재해 있는 비세금비용이 세금비용을 초과함을 보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할수록 완화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반드시 기업가치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세회피와 관련한 의사결정이 경영자에 의해 수행된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은 반드시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 등을 포함한 경영자 요소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경영자의 입장에서 기업의 조세회피를 살펴본다면, 성공적인 조세회피를 위하여 경영자는 기업의 정보불균형에 임의로 개입하여 복잡한 거래를 유발하는 등의 정보불균형을 심화시킬 유인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불균형을 악용하여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등 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Desai and Dharmapala 2006). Kim et al.(2011)은 현재의 조세회피 정도와 미래의 추가급락위험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실증하면서, 경영자가 성공적인 조세회피를 위해 기업의 부정적인 뉴스를 숨기거나 지연공시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임의적으로 기업의 정보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조세회피의 이러한 정보불균형적 속성은 경영자의 사적편익추구 행위와 결합되어 대리인 문제를 가중시킬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Tyco 사례, Enron 사례에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다. Tyco사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조세회피를 위해 조세피난처에 소재해 있는 수많은 해외자회사를 통한 복잡한 거래를 일으켰으며, 성공적인 조세회피를 위하여 일부 극소수의 임원만이 Tyco사의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파악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들은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이용하여 재무제표상 가공의 세무상 충당금을 설정한 후 이를 자신들의 보너스 지급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다. Enron사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외부의 제3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복잡한 거래를 유발하여 조세회피를 도모하려고 하였으며, 이를 악용하여 사적편익을 추구하려고 하였다(Desai 2005 ; Dhaliwal et al. 2011). 또한 Dhaliwal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현금보유량을 통해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현금보유량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실증결과, 조세회피가 증가할수록 현금보유량이 감소하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발견함으로써, 경영자가 조세회피라는 미명 하에 기업보유 현금의 재량적 사용을 통한 사적편익 추구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대리인 문제를 가중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경영자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는 기업의 정보불균형을 가중시키고 대리인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의 부정적 속성은 기업의 재무보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Frank et al.(2009)은 과세소득을 줄이는 공격적인 세무보고(aggressive tax reporting)와 이익을 상향 보고하는 공격적 재무보고(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을 발견함으로써,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와 재무보고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실증하였다. 또한 Balakrishnan et al.(2011)은 조세회피가 정보비대칭을 증대시켜 조세회피가 증가할수록 이익의 질(earnings quality)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즉, 조세회피로 인해 야기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경영자는 재무보고 수치에 대해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익보고의 재량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재량성은 조세회피에 대한 경영자의 사적편익 추구 동기로 인해 이익의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며, 외부감사의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나. 외부감사인

외부감사는 회계감사과정에서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중대한 오류나 부정이 있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확신수준을 투자자들에게 감사의견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시킨다. 또한 외부감사는 경영자와 주주 및 외부정보이용자간의 이해상충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 중요한 감시기능(monitoring)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효율적 자원배분에 기여한다(Pittman and Fortin 2004 ; Lennox 2005).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유수임제 체제하에서 감사인들은 수익성 증대를 위해 이러한 감시기능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기타 비가격 및 가격요소를 통한 경쟁자와의 차별화에도 노력한다(Mayhew and Wilkins 2003 ; Dunn and Mayhew 2004). 예를 들어 Big 감사인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인한 우위를 고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감사보수를 더 받고 있으며(Francis 1984 ; Palmrose 1986 ; 권수영과 김문철 2001),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경우 감사인이 특정 산업의 전문감사인이 되어 자신을 차별화했을 경우 품질 높은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다른 감사인에 비해 더 많은 감사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Craswell et al. 1995 ; DeFond et al. 2000 ; Krishnan 2003 ; 나종길과 최기호 2006). 나종길과 최기호(2006)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존재하며, 이러한 전문성은 감사원가의 하락요소로 작용하기보다는 우월한 감사품질로 인한 교섭력을 증대시켜 추가적인 감사보수로 연결됨을 실증한 바 있다. 나아가 McGuire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차별화를 세무전문성에 집중하였는데, 감사인의 세무전문성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증대시킴을 실증하였다. 이를 통해 외부감사에는 감시기능과 같은 공공재적 역할 이외에도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 증대를 돕는 것과 같은 감사인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감사시장에서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통한 감사인의 차별화 노력은 궁극적으로 외부감사의 감시기능 강화 노력과 더불어 감사인의 수익성 증대유인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Fiolleau et al.(2009)의 연구는 이러한 감사인의 수익성 증대유인에 초점을 두어 캐나다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의 경제적 유인에 대해 질적(qualitative)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현직 외부감사인 및 잠재적인 외부감사인, 피감사회사들을 대상으로 중요 서류(예 : 감사수임제안서, 이사회 의사록, 감사위원회 의사록 등)와 주요 인사들(피감사회사의 고위임원진, 감사 파트너 등)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경영진은 외부감사인 선임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감사인은 업무수임시 감사인간의 경쟁에서 차별화를 부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독립성 훼손을 의심받을 수도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는 회계감사 본연의 감시기능도 중요함은 물론 현실적인 수익성 확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감사의 감시기능과 피감사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유지유인을 감사노력을 통한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회피에 내재해 있는 부정적 속성은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영자는 조세회피로 인해 기업가치 증대 또는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은 피감사회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짐과 동시에 충실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본연의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조세회피활동에서 외부감사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실증 분석의 대상이라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감사시장 환경과 관련하여 감사보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반해 회계법인의 세무부분 수익 비중은 오히려 증대되어, 감사인의 세무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해 추가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판단된다.

2.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활동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함이 목적이다. 기업의 경영진은 조세회피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함과 동시에 외부감사인의 선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lemrod 2004 ; Chen and Chu 2005 ; Fiolleau et al. 2009).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고객회사 경영진과의 우호적인 관계유지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직결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속감사 계약의 수임, 고객회사에 대한 비감사 서비스의 제공, 고객회사를 통해 시장에서 좋은 평판을 얻음으로써 추가적인 잠재고객의 수임가능성 증대 등을 기대하며 감사인은 고객 회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때로는 이러한 노력이 잠재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Fiolleau et al. 2009). 직관적으로 조세회피는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현금납부세액을 줄여 기업자원의 유출을 감소시키므로(Hanlon and Heitzman 2010) 경영자가 선호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관점에서 외부감사인의 이러한 유인들은 외부감사인이 자신의 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유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다. 즉, 감사업무로 지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피감사회사에게 조세회피에 유리한 회계처리를 제시하거나, 피감사회사 경영진이 공격적인 조세회피를 위해 수행한 회계추정치를 외부감사인이 묵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영자의 조세회피 계획을 도울 수 있다.⁴⁾ 이에 감사인이 실제감사시간 또는 초과감사시간으로 측정된 감사노력을 더 투입하여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회피 행위는 기업의 정보위험 증대와 대리인 문제를 가중시켜 감사위험(audit risk)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계감사의 감시기능을 고려한다면 감사인이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돕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경영자는 성공적인 조세회피 전략을 위해 기업내부와 외부의 정보불균형을 의도적으로 심화시켜 자신의 전략노출을 방어할 유인이 있으므로 조세회피는 정보위험을 증대시킬 것이라 기대된다. 이에 대해 Kim et al.(2011)은 조세회피가 증가할수록 경영자의 의도적인 정보환경 개입으로 인한 정보위험이 커짐을 실증한 바 있다. 아울러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대리인 문제의 출발점이며, 대부분의 조세회피 전략이 경영자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 조세회피와 관련한 보상구조가 근본적으로 대리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세회피는 필연적으로 대리인 문제를 야기한다(Jensen and Meckling 1976 ; Chen and Chu 2005). 이러한 조세회피의 부정적인 속성은 Tyco사례, Enron사례 등 실제 조세회피와 관련된 사례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다(Desi and Dharmapala 2008 ; Dhaliwal et al. 2011). 조세회피가 증가한다면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경영자의 회계추정치에 대한 재량이 커지며(Frank et al. 2009), 복잡하고 애매한 거래의 증가로 인해 이익의 질이 감소하므로(Balakrishnan et al. 2011) 감사위험의 고유위험(inherent risk)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영자의 임의적인 기업정보환경의 개입과 대리인 문제로 야기된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는 내부통제제도를 우회할 가능성을 높여 통제위험(control risk)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로 인해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이 증가하여 감사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감시기능은 정보비대칭을 줄이고 대리인 문제를 감소시킬 것이라 기대되므로(Pittman and Fortin 2004 ; Lennox 2005), 감사인은 이러한 조세회피의 부정적 속성으로 인해 증대된 감사위험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 적발위험(detection risk)의 수준을 높이고자 자신의 감사노력을 더 투입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와 같이 기업의 조세회피활동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감사인의 경제적 유인 관점과 조세회피의 부정적 속성 관점에 따라 감사노력의 결과가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두 효과가 혼재되는 경우 사전적으로 그 방향성을 명확히 예측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 형태로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
- 4) 외부감사인은 피감사회사와의 관계개선 및 유지를 위해 감사 수행 도중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유리한 검토를 수행할 것이며, 중요성의 범위 내에서 선택가능한 조세회피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추가적인 검토과정에 대해 감사인이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가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초과)감사시간은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없다.

III. 연구모형 및 변수의 측정

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노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이 목적이며, 구체적으로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의 회귀식을 통해 이를 검증한다.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는 공통적으로 조세회피 측정치(TAV)를 종속변수로 두었으며, 감사 노력의 대용변수로 [연구모형 1]에서는 실제투입 감사시간(A_Hour), [연구모형 2]에서는 초과 감사시간(AB_Hour)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선행연구를 근거로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회귀모형에서 고려하였다.

[연구모형 1]

$$\begin{aligned} TAV_{1-4\ i,t} = & \omega_0 + \omega_1 A_Hour_{i,t} + \omega_2 SIZE_{i,t} + \omega_3 R\&D_{i,t} + \omega_4 LEV_{i,t} + \omega_5 GRW_{i,t} + \omega_6 ROA_{i,t} \\ & + \omega_7 NPE_{i,t} + \omega_8 DPR_{i,t} + \omega_9 CSH_{i,t} + \omega_{10} K_DA_{i,t} + \omega_{11} T_NOLD_{i,t} + \omega_{12} ADCT_{i,t} \\ & + \omega_{13} FOR_{i,t} + \omega_{14} OWN_{i,t} + \omega_{15} ADT_{i,t} + Year \ \& \ Industry_fixed + \varepsilon_{i,t} \end{aligned}$$

[연구모형 2]

$$\begin{aligned} TAV_{1-4\ i,t} = & \phi_0 + \phi_1 AB_Hour_{i,t} + \phi_2 SIZE_{i,t} + \phi_3 R\&D_{i,t} + \phi_4 LEV_{i,t} + \phi_5 GRW_{i,t} + \phi_6 ROA_{i,t} \\ & + \phi_7 NPE_{i,t} + \phi_8 DPR_{i,t} + \phi_9 CSH_{i,t} + \phi_{10} K_DA_{i,t} + \phi_{11} T_NOLD_{i,t} + \phi_{12} ADCT_{i,t} \\ & + \phi_{13} FOR_{i,t} + \phi_{14} OWN_{i,t} + \phi_{15} ADT_{i,t} + Year \ \& \ Industry_fixed + \mu_{i,t} \end{aligned}$$

여기서,

TAV_{1-4} = 4가지 조세회피 측정치 ;

A_Hour = 사업보고서상 실제투입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값 ;

AB_Hour = 감사시간모형을 통해 추정된 초과감사시간 ;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R\&D$ =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총매출액으로 규모조정 한 변수 ;

LEV = 부채비율로서 부채총액 대비 총자산의 비율 ;

GRW = 매출액 성장율로서 직전년도 대비 당기 매출액의 증감을 측정한 변수 ;

ROA = 수익성 변수로서 당기순이익 대비 총자산의 비율 ;

NPE =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규모를 측정한 변수 ;

DPR = 감가상각비와 감모상각비의 합을 기초 자산총액으로 규모조정 한 변수 ;

CSH = 현금및현금등가물의 합을 총자산으로 규모조정 한 변수 ;

K_DA = Kothari et al.(2005)의 방법으로 측정한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

T_NOLD =감사보고서상 세무상 결손금을 공시한 기업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
 $ADCT$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
 FOR =외국인주주 지분율 ;
 OWN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 ;
 ADT =외부감사인인 Big 회계법인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
 $Year \& Industry_fixed$ =연도와 산업의 고정효과.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의 주요 관심 계수 값은 ω_1 , ϕ_1 인데, 두 계수 값의 부호와 유의성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노력을 더 투입할수록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가 증대된다고 해석이 가능하거나, 반대로 감사인이 감사노력을 더 투입할수록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가 감소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연구모형의 기타 주요 통제변수와 관련하여, 기업규모(SIZE)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기업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를 용이하게 하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조세회피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되나, 큰 규모의 기업인 경우 조세회피로 인한 비조세비용(non-tax cost)이 상대적으로 절약되는 조세비용(tax cost)보다 클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조세회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Chen et al. 2010). 부채비율(LEV)은 부채사용에 따른 이자비용의 감소효과가 있으므로 조세회피와는 반대의 관계에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박종국과 홍영은 2009). 수익성(ROA)이 높은 기업은 조세회피에 적극적일 것이며, 감가상각대상자산(NPE)이 클수록 전략적 조세전략의 수립이 용이하므로 조세회피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된다(고윤성 외 2007). 기업의 현금보유량(CSH)은 실제 세금 납부시 과세이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회귀모형에서 통제하였으며, 재량적 발생액(K_DA)은 조세회피측정치가 통제하지 못하는 공격적 재무보고 행태를 통제하기 위하여 고려하였다(McGuire et al. 2012 ; Blaylock et al. 2012).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유여부(T_NOLD)는 조세납부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감사위원회(ADCT), 외국인투자지분율(FOR), 대주주지분율(OWN), 감사인이 Big 인지 여부(ADT)는 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회귀모형에서 고려하였다(Chen et al. 2010 ; McGuire et al. 2012 ; 강정연과 김영철 2012).

2. 주요 변수의 측정

가. 조세회피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효법인세율(이하 ‘GETR’), 현금납부세율(이하 ‘CETR’),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방법에 따라 측정된 재량적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차이(이하 ‘DD_BTĐ’),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차이(이하 ‘BTĐ’)의 4가지 측정치를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GETR은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 당기 세전이익)으로,

CETR은 (당기 감사보고서상 현금납부 법인세액÷당기 세전이익)으로 각각 산정된다. GETR과 CETR은 선행연구에서 조세회피 측정치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측정치로서 상대적으로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Rego 2003 ; Dyreng et al. 2010 ; Robinson et al. 2010 ; McGuire et al. 2012). 그러나 세부적으로 GETR 측정치는 실제 세금납부가 현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세금납부의 이연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CETR을 추가로 사용한다. 이 두 변수는 수치가 증가(감소)할수록 법인세 부담액이 증가(감소)하므로 조세회피가 감소(증가)한다고 해석된다. 다음으로 공격적 조세회피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진 DD_BT D는 다음 회귀식의 잔차로 산출된다(Desai and Dharmapala 2006 ; Hanlon and Heitzman 2010).

$$BTD_{i,t} = \beta_1 TA_{i,t} + \varepsilon_{i,t} \quad (3)$$

여기서,

$BTD_{i,t}$ =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차이(book-tax difference)를 전년도 총자산으로 규모조정 한 변수 ;

$TA_{i,t}$ = 총발생액(Hribar and Collins 2002)을 전년도 총자산으로 규모조정 한 변수 ;

$\varepsilon_{i,t}$ = 회귀식의 잔차로서 조세회피 측정치(DD_BT D).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차이는 Manzon and Plesko(2002)의 방법에 따라 장부상 세전이익과 추정된 과세소득간의 차이로 산출하였으며, 잔차인 DD_BT D가 증가(감소)할수록 조세회피가 증가(감소)한다고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공격적 재무보고와 공격적 세무보고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비교목적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치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차이인 BTD를 조세회피 측정치로 사용한다(Mills 1998 ; Wilson 2009). BTD가 증가(감소) 할수록 조세회피가 증가(감소)한다고 해석된다.

나. 감사노력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상 공시된 실제투입감사시간과 추정모형을 통해 산정된 초과감사시간을 사용한다. 초과감사시간은 감사인의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모형의 잔차를 통해 추정된다(Niemi 2002 ; Caramanis and Lennox 2008 ; 류승우 2010).

$$\begin{aligned} A_Hour_{i,t} = & \gamma_0 + \gamma_1 SIZE_{i,t} + \gamma_2 ADT_{i,t} + \gamma_3 CON_{i,t} + \gamma_4 INVREC_{i,t} + \gamma_5 EXPR_{i,t} + \gamma_6 ISSUE_{i,t} \\ & + \gamma_7 LIQ_{i,t} + \gamma_8 LEV_{i,t} + \gamma_9 AOP_{i,t-1} + \gamma_{10} ROA_{i,t} + \gamma_{11} LOSS_{i,t} + \gamma_{12} GRW_{i,t} \\ & + \gamma_{13} FIRST_{i,t} + \gamma_{14} OWN_{i,t} + \gamma_{15} FOR_{i,t} + Year_fixed + Industry_fixed + \zeta_{i,t} \end{aligned} \quad (4)$$

5) 구체적인 과세소득의 추정은 박승식 등(2006)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A_Hour = 사업보고서상 공시된 실제투입감사시간의 자연로그값 ;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값 ;

ADT = 감사인이 Big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변수 ;

CON = 외부감사를 받은 연결채무제표를 공시하는 기업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변수 ;

INVREC = 채고자산과 매출채권의 합을 총자산으로 규모조정한 변수 ;

EXPR = 총매출액 중 수출액의 비율 ;

ISSUE = 부채 및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액을 기초 총자산으로 규모조정한 변수 ;

LIQ =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의 비율 ;

LEV = 부채총액 대비 총자산의 비율 ;

AOP = 감사의견이 비적정 의견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변수 ;

ROA = 순이익 대비 총자산의 비율 ;

LOSS = 당기순손실 보고기업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1’의 값을 갖는 변수 ;

GRW = 전년대비 당년도 매출액 성장률 ;

FIRST = 초도감사 기업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변수 ;

OWN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 ;

FOR = 외국인주주 지분율 ;

Year fixed & Industry fixed = 연도와 산업의 고정효과 ;

ζ = 초과감사시간.

IV. 표본 선정 및 기술통계

1. 표본선정

연구표본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데이터는 Fn-Guide, TS-2000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표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표본기간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비금융업일 것
- (2) 세전이익과 법인세비용이 음(-)인 기업은 제외하였으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상 현금납부 법인세액을 공시한 기업일 것
- (3) 사업보고서상 감사시간을 ‘시간’의 형태로 공시한 기업일 것
- (4) 초과감사시간,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및 기타통제변수 등을 산정하기 위한 재무자료가 존재하는 기업일 것

먼저 (1)의 조건에서 업종별 재무보고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세법 적용시기의 통일성과 재무보고 대상기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산월을 12월말 기준 법인으로 한정한다. (2)의 조건은 유효법인세율(GETR)과 현금납부세율(CETR)⁶⁾을 산정하여 조세회피 측정치를 추정하기 위함이며, (3)의 조건은 감사노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다⁷⁾. 마지막으로 (4)에서는 초과감사시간과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의 추정시 필요한 변수가 결측치인 기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은 총 2,898개 기업/년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표본선정 과정에 따른 표본구성 현황은 다음의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표본 선정과정에 따른 표본구성 현황

표본 선정 기준	감소 표본	최종 표본
(1) 표본기간 동안 유가증권 상장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비금융업일 것		6,341
(2) 세전이익과 법인세비용이 음(-)인 기업은 제외, 사업보고서상 현금 납부 법인세액을 공시할 것	(2,828)	3,513
(3) 사업보고서상에 감사시간을 ‘시간’의 형태로 공시할 것	(540)	2,973
(4) 기타 필요변수들에 대한 결측치 제거	(75)	2,898

<표 2> 표본의 연도별 · 산업별 분포

산업(대분류)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
농업, 임업 및 어업	0	0	2	3	3	3	2	3	3	3	22 [0.76]
제조업	64	100	208	233	245	258	265	223	256	198	2,050 [70.7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3	8	9	9	10	10	8	9	9	76 [2.62]
건설업	7	12	19	23	24	23	27	25	20	14	194 [6.69]
도매 및 소매업	2	4	15	18	25	25	25	26	25	24	189 [6.52]

- 6)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상 현금납부법인세액 수집시 당기 중 합병·분할 등의 조직변경, 결산기 변경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법인세 납부세액이라 간주하기 어려운 관측치는 제외하였다.
- 7) 사업보고서상 감사시간은 대부분 기업의 경우 ‘시간’단위로 기표되어 있지만 일부 기업은 ‘일’단위, ‘주’단위로 기표되어 있다. 감사투입노력 측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간’단위만 분석대상으로 한다.

〈표 2〉 표본의 연도별·산업별 분포 (계속)

산업(대분류)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 계 [%]
운수업	0	2	5	9	12	11	15	7	8	6	75 [2.59]
숙박 및 음식점업	1	1	1	1	1	1	1	1	1	1	10 [0.3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	4	6	8	10	10	10	10	12	11	84 [2.90]
부동산 및 임대업	0	0	1	0	0	1	1	1	0	0	4 [0.1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13	19	24	26	25	17	14	13	5	167 [5.7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	0	1	1	1	1	2	1	1	2	10 [0.35]
교육서비스업	0	0	0	1	1	1	1	1	1	1	7 [0.2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	0	1	1	1	1	1	1	2	2	10 [0.35]
합 계	89	139	286	331	358	370	377	321	351	276	2,898 [100.00]

<표 2>는 연도별·산업별 표본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연도별 관측치 수는 2001년과 2002년을 제외하고는 연도별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⁸⁾. 산업별 분포는 제조업이 전체 표본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건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이 분포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 비중 등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산업별 표본 구성에는 표본 선택에 따른 편의는 내재되어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다음으로 <표 3>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다.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먼저 유효법인세율(GETR)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0.263

8) 사업보고서상 감사시간이 공시되기 시작한 초창기인 2001년과 2002년에는 관측치의 부재(예 ‘시간’단위 이외 공시, 미공시 등)로 인해 표본수가 감소하였다. 추가로 2001년과 2002년의 관측치를 제외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여도 본 연구의 결과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과 0.099로, 현금납부세율(CETR)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0.277과 0.159로 나타나서, 현금납부세율(CETR)의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유효법인세율(GETR)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3〉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⁹⁾

변수	Mean	Min	25%	Median	75%	Max	Std
GETR	0.263	0	0.214	0.259	0.298	0.658	0.099
CETR	0.277	0	0.187	0.255	0.319	1	0.159
DD_BT D	0.013	-0.158	-0.012	0.015	0.041	0.164	0.052
BT D	0.011	-0.127	-0.009	0.008	0.029	0.170	0.044
A_HOUR	1,664	100	558	837	1,420	48,200	3,606
AB_HOUR	0.003	-2.815	-0.237	0.031	0.304	1.565	0.507
SIZE	26.623	23.324	25.559	26.296	27.356	32.305	1.496
R&D	0.008	0	0	0.001	0.007	0.208	0.018
LEV	0.398	0.009	0.267	0.398	0.516	0.910	0.165
GRW	0.101	-0.996	0.007	0.083	0.178	0.883	0.186
ROA	0.067	-0.021	0.035	0.060	0.089	0.435	0.044
NPE	0.192	0	0.103	0.170	0.252	0.877	0.121
DPR	0.034	0	0.018	0.029	0.044	0.537	0.027
CSH	0.071	0	0.017	0.046	0.096	0.685	0.078
K_DA	-0.009	-0.243	-0.048	-0.008	0.030	0.185	0.071
T_NOLD	0.009	0	0	0	0	1	0.093
ADCT	0.207	0	0	0	0	1	0.405
FOR	0.141	0	0.007	0.064	0.229	1.047	0.171
OWN	0.422	0	0.313	0.424	0.537	0.927	0.164
ADT	0.665	0	0	1.000	1	1	0.472

여기서, GETR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으로 측정된 유효세율, CETR은 현금납부세액으로 측정된 유효세율, DD_BT D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방법으로 측정된 조세회피도, BT D는 장부상 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차이로 측정된 조세회피도, A_HOUR는 외부감사인이 실제 투입한 감사시간, AB_HOUR는 감사시간결정모형에 의해 산정한 초과감사시간, SIZE는 자산총액을 자연로그화한 기업규모 변수, R&D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자산총액으로 규모 조정한 변수, LEV는 (총부채÷총자산)으로 산정한 부채비율 변수, GRW는 매출액으로 측정된 기업 성장율로서 당기매출액과 전기매출액의 차이를 전기매출액으로 규모 조정한 변수, ROA는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규모조정한 변수, NPE는 토지와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총계금액, DPR은 감가상각비와 감모상각비의 합을 기초 유형자산 금액으로 규모조정한 변수, CSH는 현금및현금등가물의 합을 총자산으로 규모조정한 변수로서 기업의 현금보유량을 측정된 변수, K_DA는 Kothari et al.(2005)의 방법에 의해 측정된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 T_NOLD는 사업보고서상 세

9) 변수 측정시 원칙적으로 더미변수를 제외한 기타 변수들의 경우 상·하위 1% 수준에서 winsorization하였다.

무상 결손금을 공시한 기업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ADCT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FOR는 외국인주주 지분율, OWN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 ADT는 외부감사인인 Big 회계법인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Desai and Dharmapala(2006)에 의한 DD_BTDT의 평균값은 0.013, 표준편차는 0.052로 나타났으며, 장부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의 차이인 BTDT의 평균값은 0.011, 표준편차는 0.044로 나타났다. 실제투입 감사시간은(A_HOUR)은 연간 평균 1,664시간이며, 초과투입감사시간(AB_HOUR)¹⁰⁾의 평균은 0.003의 양(+)의 수치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기타 주요 통제변수들로서, 표본기업의 부채비율(LEV)은 평균 39.8%, 매출액으로 측정된 성장률(GRW)은 평균 10.1%, 수익률(ROA)은 평균 6.7%로 나타났다. 아울러 표본기간 내에 세무상 결손금을 보고한 기업은 평균 0.9%, 감사위원회 존재(ADCT) 기업은 평균 20.7%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주주지분율(FOR)은 평균 14.1%, 대주주 및 최대주주지분율(OWN)은 평균 42.2%, 외부감사인인 Big 감사인인 경우(ADT)는 66.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실증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는 <표 4>에 제시되었다. 먼저 피어슨 상관계수 기준으로 조세회피측정치간 상관계수로 유효세율(GETR)과 현금납부세율(CETR)은 0.54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GETR과 DD_BTDT간에는 -0.35, GETR과 BTDT간에는 -0.44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DD_BTDT와 BTDT간에는 0.79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를 근거로 조세회피 측정치간 일관적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제투입감사시간(A_HOUR)과 조세회피측정치 GETR, CETR, DD_BTDT, BTDT간에는 상관계수가 각각 -0.10, -0.09, 0.19, 0.14로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었으며, 초과감사투입시간(AB_HOUR)과 조세회피측정치 간에도 유사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단변량 분석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감사투입노력이 증가할수록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도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기타 통제변수들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유발할 정도의 높은 상관계수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증분석 결과에는 최대 분산팽창계수(VIF)를 보고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최대 분산팽창계수가 4를 넘지 않았으므로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회귀분석 결과의 왜곡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¹¹⁾

10) 참고로 초과감사투입시간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식 (4)의 감사시간 결정모형에서 사용된 표본은 본 연구의 표본기간과 동일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 수는 4,660개, 수정 설명력은 65.51%로 나타났다. 지면관계상 세부 추정결과의 제시는 생략한다.

11)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시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 값이 10을 상회하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다.

<표 4>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갈호안은 양측검정 p-값)

		PEARSON Correlation																			
		GETR	CETR	DD_BT D	BTD	A_HOUR	AB_HOUR	SIZE	R&D	LEV	GRW	ROA	NPE	DPR	CSH	K_DA	T_NOLD	ADCT	FOR	OWN	ADT
S P E A R M A N	GETR		0.54 (0.00)	-0.35 (0.00)	-0.44 (0.00)	-0.10 (0.00)	-0.07 (0.00)	-0.04 (0.09)	0.01 (0.49)	0.14 (0.00)	-0.05 (0.03)	-0.26 (0.00)	-0.09 (0.00)	-0.11 (0.00)	-0.01 (0.61)	-0.02 (0.48)	-0.06 (0.01)	-0.04 (0.04)	0.02 (0.36)	-0.04 (0.09)	-0.03 (0.12)
	CETR	0.58 (0.00)		-0.42 (0.00)	-0.51 (0.00)	-0.09 (0.00)	-0.05 (0.02)	-0.08 (0.00)	0.02 (0.36)	0.13 (0.00)	-0.10 (0.00)	-0.32 (0.00)	-0.09 (0.00)	-0.09 (0.00)	-0.02 (0.35)	0.00 (0.89)	-0.00 (0.84)	-0.07 (0.00)	-0.04 (0.07)	-0.03 (0.11)	-0.09 (0.09)
	DD_BT D	-0.36 (0.00)	-0.52 (0.00)		0.79 (0.00)	0.19 (0.00)	0.07 (0.00)	0.17 (0.00)	0.01 (0.51)	-0.11 (0.00)	0.02 (0.46)	0.27 (0.00)	0.24 (0.00)	0.26 (0.00)	0.10 (0.00)	-0.43 (0.00)	0.02 (0.31)	0.09 (0.00)	0.12 (0.00)	-0.02 (0.27)	0.08 (0.00)
	BTD	-0.48 (0.00)	-0.69 (0.00)	0.74 (0.00)		0.14 (0.00)	0.05 (0.02)	0.12 (0.00)	-0.01 (0.65)	-0.14 (0.00)	0.09 (0.00)	0.40 (0.00)	0.06 (0.00)	0.07 (0.00)	0.05 (0.01)	0.05 (0.01)	0.03 (0.23)	0.07 (0.00)	0.07 (0.00)	0.01 (0.66)	0.07 (0.00)
	A_HOUR	-0.06 (0.01)	-0.08 (0.00)	0.14 (0.00)	0.09 (0.00)		0.38 (0.00)	0.59 (0.00)	0.18 (0.00)	0.07 (0.00)	0.01 (0.54)	0.09 (0.00)	0.18 (0.00)	0.27 (0.00)	-0.07 (0.00)	-0.09 (0.00)	0.01 (0.63)	0.33 (0.00)	0.36 (0.00)	-0.26 (0.00)	0.19 (0.00)
	AB_HOUR	-0.09 (0.00)	-0.06 (0.00)	0.07 (0.00)	0.03 (0.12)	0.47 (0.00)		0.02 (0.29)	0.12 (0.00)	-0.01 (0.59)	-0.01 (0.78)	0.04 (0.00)	0.03 (0.12)	0.12 (0.00)	-0.01 (0.56)	-0.04 (0.08)	0.01 (0.56)	0.09 (0.00)	0.03 (0.22)	0.02 (0.27)	-0.01 (0.70)
	SIZE	0.02 (0.39)	-0.06 (0.00)	0.14 (0.00)	0.09 (0.00)	0.72 (0.00)	-0.09 (0.00)		0.05 (0.02)	0.26 (0.00)	0.06 (0.00)	0.06 (0.00)	0.22 (0.00)	0.14 (0.00)	-0.06 (0.00)	-0.05 (0.01)	0.03 (0.24)	0.54 (0.00)	0.52 (0.00)	-0.23 (0.00)	0.31 (0.00)
	R&D	0.03 (0.23)	0.05 (0.01)	0.00 (0.90)	-0.04 (0.08)	0.18 (0.00)	0.14 (0.00)	0.09 (0.00)		-0.12 (0.00)	0.07 (0.00)	0.09 (0.00)	-0.06 (0.01)	0.06 (0.00)	0.02 (0.38)	-0.07 (0.00)	-0.03 (0.19)	0.10 (0.00)	0.09 (0.00)	-0.13 (0.00)	0.08 (0.00)
	LEV	0.16 (0.00)	0.12 (0.00)	-0.11 (0.00)	-0.16 (0.00)	0.24 (0.00)	-0.02 (0.25)	0.26 (0.00)	-0.08 (0.00)		0.13 (0.00)	-0.34 (0.00)	0.17 (0.00)	0.01 (0.66)	-0.12 (0.00)	0.14 (0.00)	0.06 (0.00)	0.20 (0.01)	-0.06 (0.00)	-0.12 (0.00)	0.06 (0.00)
	GRW	-0.02 (0.27)	-0.02 (0.28)	0.01 (0.64)	0.04 (0.05)	0.06 (0.01)	0.01 (0.66)	0.07 (0.00)	0.01 (0.72)	0.13 (0.00)		0.21 (0.00)	0.02 (0.29)	0.09 (0.00)	0.11 (0.00)	0.10 (0.00)	-0.02 (0.42)	0.01 (0.63)	-0.00 (0.99)	-0.01 (0.64)	0.01 (0.67)
ROA	-0.22 (0.00)	-0.27 (0.00)	0.28 (0.00)	0.39 (0.00)	0.05 (0.03)	-0.01 (0.77)	0.05 (0.02)	0.07 (0.00)	-0.36 (0.00)	0.20 (0.00)		-0.07 (0.00)	0.10 (0.00)	0.24 (0.00)	-0.12 (0.00)	-0.04 (0.07)	0.06 (0.00)	0.29 (0.00)	0.02 (0.30)	0.09 (0.00)	
NPE	-0.08 (0.00)	-0.08 (0.00)	0.26 (0.00)	0.08 (0.00)	0.16 (0.00)	0.05 (0.01)	0.17 (0.00)	-0.03 (0.23)	0.14 (0.00)	0.01 (0.77)	-0.06 (0.00)		0.55 (0.00)	-0.20 (0.00)	-0.03 (0.14)	0.01 (0.57)	0.13 (0.00)	0.10 (0.00)	-0.00 (0.97)	0.09 (0.00)	
DPR	-0.14 (0.00)	-0.11 (0.00)	0.34 (0.00)	0.13 (0.00)	0.09 (0.00)	0.10 (0.00)	0.06 (0.00)	0.03 (0.14)	-0.02 (0.25)	0.06 (0.01)	0.08 (0.00)	0.71 (0.00)		-0.08 (0.00)	-0.19 (0.00)	0.00 (0.97)	0.02 (0.30)	0.17 (0.00)	-0.05 (0.03)	0.08 (0.00)	
CSH	-0.02 (0.48)	0.01 (0.56)	0.09 (0.00)	0.02 (0.47)	0.01 (0.56)	-0.02 (0.31)	-0.02 (0.31)	0.09 (0.00)	-0.14 (0.00)	0.09 (0.00)	0.23 (0.00)	-0.21 (0.00)	-0.11 (0.00)		-0.18 (0.00)	0.03 (0.18)	-0.03 (0.19)	0.07 (0.00)	-0.03 (0.24)	0.08 (0.00)	
K_DA	-0.04 (0.05)	-0.04 (0.07)	-0.43 (0.00)	0.04 (0.09)	-0.05 (0.03)	-0.05 (0.01)	-0.04 (0.07)	-0.07 (0.00)	0.15 (0.00)	0.07 (0.00)	-0.13 (0.00)	-0.04 (0.04)	-0.18 (0.00)	-0.18 (0.00)		0.01 (0.52)	-0.02 (0.41)	-0.12 (0.00)	0.05 (0.01)	-0.04 (0.04)	
T_NOLD	-0.04 (0.05)	-0.03 (0.21)	0.02 (0.35)	0.02 (0.40)	0.04 (0.04)	0.02 (0.44)	0.01 (0.64)	-0.02 (0.36)	0.05 (0.01)	-0.02 (0.46)	-0.04 (0.05)	0.01 (0.63)	-0.00 (0.91)	0.03 (0.19)	0.01 (0.76)		0.06 (0.00)	-0.01 (0.52)	-0.01 (0.68)	0.04 (0.10)	
ADCT	-0.03 (0.11)	-0.07 (0.00)	0.09 (0.00)	0.07 (0.00)	0.43 (0.00)	0.10 (0.00)	0.47 (0.00)	0.15 (0.00)	0.19 (0.00)	0.04 (0.04)	0.07 (0.00)	0.12 (0.00)	0.06 (0.01)	-0.00 (0.96)	-0.02 (0.36)	0.06 (0.00)		0.33 (0.00)	-0.16 (0.00)	0.19 (0.00)	
FOR	0.08 (0.00)	0.03 (0.14)	0.10 (0.00)	0.05 (0.02)	0.48 (0.00)	-0.04 (0.07)	0.58 (0.00)	0.18 (0.00)	-0.03 (0.19)	0.06 (0.01)	0.28 (0.00)	0.06 (0.01)	0.10 (0.00)	0.11 (0.00)	-0.12 (0.00)	-0.01 (0.69)	0.32 (0.00)		-0.23 (0.00)	0.23 (0.00)	
OWN	-0.06 (0.00)	-0.05 (0.01)	-0.01 (0.64)	0.03 (0.17)	-0.19 (0.00)	0.04 (0.09)	-0.19 (0.00)	-0.13 (0.00)	-0.14 (0.00)	-0.01 (0.67)	0.04 (0.07)	0.01 (0.54)	0.02 (0.00)	-0.07 (0.00)	0.06 (0.01)	-0.02 (0.45)	-0.17 (0.00)	-0.26 (0.00)		-0.05 (0.01)	
ADT	-0.05 (0.02)	-0.04 (0.04)	0.09 (0.00)	0.05 (0.01)	0.44 (0.00)	-0.06 (0.00)	0.32 (0.00)	0.10 (0.00)	0.07 (0.00)	0.02 (0.40)	0.10 (0.00)	0.09 (0.00)	0.07 (0.00)	0.12 (0.00)	-0.04 (0.04)	0.04 (0.10)	0.19 (0.00)	0.25 (0.00)	-0.05 (0.03)		

여기서,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은 <표 3> 참조. 상관관계 표의 대각선 위 쪽은 Pearson 상관계수를, 대각선 아래쪽은 Spearman 상관계수를 보고함.

S P E A R M A N

V. 실증분석 결과

1. 회귀분석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PANEL A]와 [PANEL B]에 각각 보고하였다.

<표 5> 회귀분석결과

[연구모형 1]

$$TAV_{1\sim 4\ i,t} = \omega_0 + \omega_1 A_Hour_{i,t} + \omega_2 SIZE_{i,t} + \omega_3 R\&D_{i,t} + \omega_4 LEV_{i,t} + \omega_5 GRW_{i,t} + \omega_6 ROA_{i,t} \\ + \omega_7 NPE_{i,t} + \omega_8 DPR_{i,t} + \omega_9 CSH_{i,t} + \omega_{10} K_DA_{i,t} + \omega_{11} T_NOLD_{i,t} + \omega_{12} ADCT_{i,t} \\ + \omega_{13} FOR_{i,t} + \omega_{14} OWN_{i,t} + \omega_{15} ADT_{i,t} + Year_fixed + Industry_fixed + \varepsilon_{i,t} \quad (1)$$

[PANEL A]

Variables	TAV1=GETR		TAV2=CETR		TAV3=DD_BT D		TAV4=BT D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Intercept	0.465***	7.48	0.724***	7.42	-0.216***	-7.74	-0.219***	-8.42
A_HOUR	-0.011***	-2.59	-0.013**	-2.03	0.007***	3.87	0.001***	3.33
SIZE	-0.001	-0.51	-0.005	-1.45	0.003***	2.70	0.004***	3.45
R&D	0.361***	3.04	0.666***	3.58	-0.127**	-2.38	-0.143***	-2.88
LEV	0.072***	4.89	0.072***	3.12	-0.021***	-3.08	-0.023***	-3.74
GRW	-0.004	-0.40	-0.057***	-3.15	0.009**	1.89	0.008	1.55
ROA	-0.605***	-11.22	-1.165***	-13.78	0.268***	11.06	0.435***	19.31
NPE	-0.077***	-3.47	-0.107***	-3.07	0.087***	8.72	0.034***	3.62
DPR	-0.245***	-2.57	0.087	0.58	0.020	0.47	-0.049	-1.24
CSH	0.012	0.47	0.043	1.01	0.028**	2.33	0.014	1.23
K_DA	-0.076***	-2.60	-0.057	-1.25	-0.285***	-21.58	0.062***	5.04
T_NOLD	-0.071***	-3.38	-0.039	-1.20	0.019**	2.08	0.020**	2.30
ADCT	-0.007	-1.18	-0.014	-1.49	-0.001	-0.29	-0.002	-0.83
FOR	0.090***	6.03	0.100***	4.28	-0.031***	-4.56	-0.038***	-6.07
OWN	0.001	0.07	-0.014	-0.70	0.003	0.59	0.00003	0.01
ADT	0.002	0.35	0.003	0.49	0.0003	0.18	0.001	0.66
Adj. R ²	14.72%		19.61%		37.07%		22.54%	
F-Value	11.44***		15.74***		36.60***		26.27***	
# Of Samples	2,898		2,898		2,898		2,898	
Max VIF	3.59		3.59		3.59		3.59	
Industry & Year	fixed		fixed		fixed		fixed	

<표 5> 회귀분석결과 (계속)

[연구모형 2]

$$TAV_{1\sim 4\ i,t} = \phi_0 + \phi_1 AB_Hour_{i,t} + \phi_2 SIZE_{i,t} + \phi_3 R\&D_{i,t} + \phi_4 LEV_{i,t} + \phi_5 GRW_{i,t} + \phi_6 ROA_{i,t} \\ + \phi_7 NPE_{i,t} + \phi_8 DPR_{i,t} + \phi_9 CSH_{i,t} + \phi_{10} K_DA_{i,t} + \phi_{11} T_NOLD_{i,t} + \phi_{12} ADCT_{i,t} \\ + \phi_{13} FOR_{i,t} + \phi_{14} OWN_{i,t} + \phi_{15} ADT_{i,t} + Year \ \& \ Industry_fixed + \mu_{i,t} \quad (2)$$

[PANEL B]

Variables	TAV1=GETR		TAV2=CETR		TAV3=DD_BT D		TAV4=BT D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Intercept	0.511***	8.45	0.781***	8.23	-0.246***	-9.07	-0.243***	-9.61
AB_HOUR	-0.010**	-2.36	-0.012*	-1.87	0.006***	3.33	0.005***	2.69
SIZE	-0.006***	-2.90	-0.011***	-3.64	0.006***	6.84	0.006***	7.34
R&D	0.359***	3.03	0.665***	3.57	-0.125**	-2.33	-0.141***	-2.83
LEV	0.069***	4.73	0.069***	2.99	-0.019***	-2.83	-0.022***	-3.52
GRW	-0.005	-0.39	-0.057***	-3.14	0.010*	1.85	0.007	1.51
ROA	-0.603***	-11.20	-1.164***	-13.76	0.268***	11.03	0.435***	19.27
NPE	-0.076***	-3.44	-0.107***	-3.05	0.087***	8.67	0.033***	3.57
DPR	-0.248***	-2.60	0.084	0.56	0.023	0.54	-0.046	-1.15
CSH	0.014	0.52	0.045	1.05	0.027**	2.24	0.013	1.15
K_DA	-0.077***	-2.61	-0.058	-1.25	-0.286***	-21.55	0.062***	5.04
T_NOLD	-0.072***	-3.38	-0.040	-1.20	0.020**	2.08	0.021**	2.30
ADCT	-0.007	-1.21	-0.014	-1.51	-0.001	-0.24	-0.002	-0.77
FOR	0.087***	5.86	0.097***	4.14	-0.029***	-4.31	-0.037***	-5.85
OWN	0.005	0.37	-0.009	-0.47	0.001	0.16	-0.002	-0.36
ADT	-0.002	-0.33	-0.0003	-0.05	0.003	0.22	0.003	1.57
Adj. R ²	14.68%		19.59%		36.95%		26.14%	
F-Value	11.40***		15.72***		36.43***		22.40***	
# Of Samples	2,898		2,898		2,898		2,898	
Max VIF	2.12		2.12		2.12		2.12	
Industry & Year	fixed		fixed		fixed		fixed	

구체적인 추정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3> 참조, *, **, ***는 양측검정으로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PANEL A]는 주요 관심변수가 실제감사투입시간(A_HOUR)인 경우이며, [PANEL B]의 경우는 주요 관심변수가 초과감사시간(AB_HOUR)인 경우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PANEL A]에서는 실제감사투입시간(A_HOUR)과 GETR, CETR간의 회귀계수 값이 각각 -0.011, -0.013으로 1%, 5% 수준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실제감사투입시

간(A_HOUR)은 DD_BTД와 BTД간에 각각 0.007, 0.001의 회귀계수 값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실제투입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정도가 증가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PANEL B]의 경우는 주요 관심변수가 초과감사시간(AB_HOUR)이므로, AB_HOUR와 GETR 및 CETR간의 회귀계수 값은 각각 -0.010, -0.012로 5%, 1% 수준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DD_BTД와 BTД간에는 각각 0.006, 0.005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감사인이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할수록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 정도가 증가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기타 주요 통제변수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PANEL A]를 위주로 살펴보면, 기업규모(SIZE)는 GETR 및 CETR과의 회귀계수 값이 각각 -0.001, -0.005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DD_BTД와 BTД간에는 0.003, 0.004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상대적으로 조세회피로 인한 비조세비용보다 조세회피로 인해 절약되는 조세비용이 더 크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부채비율(LEV)의 경우 GETR과 CETR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을, DD_BTД와 BTД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을 나타내어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는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박종국과 홍영은 2009). 또한 외국인지분율(FOR)은 GETR, CETR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을, DD_BTД와 BTД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을 나타내어 외국인투자자 지분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할 수 있다(박종국과 홍영은 2009 ; 강정연과 김영철 2012).

이러한 실증 결과는 결국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감사과정에서 지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하여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유리한 역할을 한 것이라 해석이 되며, 이를 근거로 감사로 인해 습득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조세회피로의 전이(spill-over)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추가분석

가. 외부감사인이 세무관련 서비스¹²⁾를 동시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석¹³⁾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외부감사인이 고객회사와의 우호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감사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감사인이 감

12) 본 연구에서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게 제공한 세무관련 서비스는 사업보고서상 동일감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감사서비스 공시 내역 중 ‘세무조정’과 ‘세무관련 자문’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사업보고서상 2002년부터 동일감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감사서비스 공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 추가분석의 표본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13)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사노력 변수에는 감사품질개선 효과와 피감사회사와의 관계개선 효과가 혼재되

사과정에서 지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여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유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사지식의 조세회피로의 지식전이(spill-over) 현상은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세무와 관련한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면 더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즉,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세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조세회피에 활용하였다면,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하더라도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유의하게 증대시키지 못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표본을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게 세무관련 서비스를 회계감사와 동시에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양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세무관련 서비스와 회계감사를 동시제공한 경우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세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감사인의 추가적인 감사노력으로 조세회피를 증대시키기 어렵다고 예상된다. 반면 회계감사 업무만 피감사회사에게 제공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피감사회사의 세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파악 정도가 떨어지므로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여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클 것이라 예상된다. 이하 <표 6>에서는 관련된 추가 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표 6> 추가분석결과¹⁴⁾

[연구모형 1]

$$TAV_{1-4\ i,t} = \omega_0 + \omega_1 A_Hour_{i,t} + \omega_2 SIZE_{i,t} + \omega_3 R\&D_{i,t} + \omega_4 LEV_{i,t} + \omega_5 GRW_{i,t} + \omega_6 ROA_{i,t} \\ + \omega_7 NPE_{i,t} + \omega_8 DPR_{i,t} + \omega_9 CSH_{i,t} + \omega_{10} K_DA_{i,t} + \omega_{11} T_NOLD_{i,t} + \omega_{12} ADCT_{i,t} \\ + \omega_{13} FOR_{i,t} + \omega_{14} OWN_{i,t} + \omega_{15} ADT_{i,t} + Year_fixed + Industry_fixed + \varepsilon_{i,t} \quad (1)$$

[PANEL A] 동시제공하는 경우

Variables	TAV ₁ =GETR		TAV ₂ =CETR		TAV ₃ =DD_BT D		TAV ₄ =BT D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Intercept	0.329***	2.71	0.381**	1.99	-0.163***	-2.65	-0.156***	-2.74
A_HOUR	-0.014	-1.50	-0.022	-1.54	0.002	0.45	0.003	0.76
SIZE	0.005	0.84	0.009	1.06	0.002	0.83	0.002	0.81
Adj. R ²	13.44%		22.48%		38.53%		28.76%	
F-value	3.07***		4.86***		9.34***		6.37***	
# of samples	535		535		535		535	

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주요 실증 결과는 감사노력으로 인한 관계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감사노력 변수에 혼재되어 있는 이러한 효과들을 구분하기에는 자료 수집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추가분석은 감사지식이 조세회피로의 지식전이 현상이 존재하는지를 외부감사인이 세무관련 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검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러한 혼재효과를 재검증하고자 한다.

14) 본 추가분석의 결과는 지면관계상 주요 관심변수 위주로 보고하였다.

〈표 6〉 추가분석결과 (계속)

[PANEL B] 동시제공하지 않는 경우								
Variables	TAV ₁ =GETR		TAV ₂ =CETR		TAV ₃ =DD_BT D		TAV ₄ =BT D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Intercept	0.512***	5.47	0.836***	5.68	-0.266***	-6.50	-0.262***	-6.86
A_HOUR	-0.011**	-2.38	-0.014**	-1.96	0.008***	3.92	0.006***	3.26
SIZE	-0.003	-1.02	-0.009**	-2.03	0.004***	2.95	0.004***	3.79
Adj. R ²	15.65%		19.04%		37.24%		26.22%	
F-value	10.01***		12.43***		29.82***		18.27***	
# of samples	2,274		2,274		2,274		2,274	

[연구모형 2]

$$\begin{aligned}
 TAV_{1-4\ i,t} = & \phi_0 + \phi_1 AB_Hour_{i,t} + \phi_2 SIZE_{i,t} + \phi_3 R\&D_{i,t} + \phi_4 LEV_{i,t} + \phi_5 GRW_{i,t} + \phi_6 ROA_{i,t} \\
 & + \phi_7 NPE_{i,t} + \phi_8 DPR_{i,t} + \phi_9 CSH_{i,t} + \phi_{10} K_DA_{i,t} + \phi_{11} T_NOLD_{i,t} + \phi_{12} ADCT_{i,t} \\
 & + \phi_{13} FOR_{i,t} + \phi_{14} OWN_{i,t} + \phi_{15} ADT_{i,t} + Year \ \& \ Industry_fixed + \mu_{i,t}
 \end{aligned} \quad (2)$$

[PANEL C] 동시제공하는 경우

Variables	TAV ₁ =GETR		TAV ₂ =CETR		TAV ₃ =DD_BT D		TAV ₄ =BT D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Intercept	0.392***	3.54	0.479***	2.75	-0.174***	-3.11	-0.171***	-3.32
AB_HOUR	-0.012	-1.29	-0.022	-1.48	0.001	0.14	0.002	0.47
SIZE	-0.001	-0.27	0.0003	0.05	0.003*	1.73	0.004**	2.01
Adj. R ²	13.30%		22.44%		38.50%		28.69%	
F-value	3.04***		4.85***		9.33***		6.36***	
# of samples	535		535		535		535	

[PANEL D] 동시제공하지 않는 경우

Variables	TAV ₁ =GETR		TAV ₂ =CETR		TAV ₃ =DD_BT D		TAV ₄ =BT D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Estimate	t-value
Intercept	0.559***	6.00	0.896***	6.11	-0.299***	-7.34	-0.287***	-7.54
AB_HOUR	-0.011**	-2.26	-0.013*	-1.81	0.007***	3.51	0.005***	2.75
SIZE	-0.007***	-3.24	-0.015***	-4.14	0.006***	6.89	0.007***	7.37
Adj. R ²	15.63%		19.01%		37.13%		26.09%	
F-value	10.00***		12.41***		29.69***		18.15***	
# of samples	2,274		2,274		2,274		2,274	

구체적인 변수측정에 대한 설명은 <표 3> 참조, *, **, ***는 양측검정으로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표 6>의 [PANEL A]와 [PANEL B]는 [연구모형 1]에 대해서 표본을 양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PANEL A]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감사서비스와 세무관련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실제투입감사시간(A_HOUR)과 4가지 조세회피 측정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PANEL B]와 같이 외부감사인이 감사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제투입감사시간(A_HOUR)과 4가지 조세회피 측정치 간에 조세회피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을 발견할 수 있었다. [PANEL C]와 [PANEL D]는 [연구모형 2]에 대해서 표본을 양분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결과는 [PANEL A]와 [PANEL B]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외부감사인이 감사서비스만 피감사회사에 제공할 경우 초과감사투입시간(AB_HOUR)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도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에게 이미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피감사회사의 세무관련 내용에 대해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여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증대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감사대상 회사에게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감사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감사노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은 감사에서 얻은 지식으로 고객회사와의 관계개선 및 추가업무수임을 위해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하여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증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결국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와의 우호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¹⁵⁾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조세회피활동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외부감사인이 견지해야할 감사업무 본연의 감시기능과 피감사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유지유인이 조세회피활동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실증하였다. 경영자는 조세회피로 인해 기업가치 증대 또는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는 기업의 정보불균형과 대리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Desai and Dharmapala 2006 ; Dhaliwal et al. 2011 ; Balakrishnan et al. 2011). 아울러 자유수입제하에서 치열한 감사시장 경쟁구조를 고려한다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은 경

15) 본 추가분석의 결과는 McGuire et al.(2012)의 실증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즉 McGuire et al.(2012)의 분석결과에서는 조세전문 외부감사인이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는 전반적으로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으로 본 연구는 McGuire et al.(2012)의 연구에 비해 조세전문 외부감사인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점, 미국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과의 관련성이 떨어짐에 비해 우리나라는 결산조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환경적 차이(구자은 2013) 등이 있다.

제적 유인으로 인해 피감사회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 본연의 감시기능을 고려한다면 감사인은 조세회피의 부정적 속성이 감사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의 노력을 투입하여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줄이거나 돕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조세회피활동에서 외부감사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특히 최근 감사보수 하락 상황에서 꾸준히 회계법인의 세무 관련 매출비중이 증대되는 현실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거래소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2,898개(기업/년)의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할수록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감사과정에서 지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하여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유리한 역할을 한 것이라 해석이 되며, 감사업무로 인해 습득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조세회피로 전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가분석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을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게 세무관련 서비스를 회계감사와 동시에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양분하여 분석해보았다. 결과 외부감사업무와 세무관련 업무를 동시제공하는 표본에서는 조세회피와 감사노력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으나, 외부감사업무만 제공하는 표본에서는 양자간의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즉,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에게 이미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피감사회사의 세무관련 내용에 대해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하여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증대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감사대상 회사에게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감사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감사노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은 감사에서 얻은 지식으로 고객회사와의 관계개선 및 추가업무수임을 위해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하여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증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결국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와의 우호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증적 의미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조세회피 전략에 있어서 역할을 검증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감시기능(*monitoring role*) 또는 감사인의 독립성(*auditor independence*)이 조세회피와 관련된 감사인의 경제적 유인과 상충되었을 때 감사인이 경제적 유인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시도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않은 조세회피 연구영역과 회계감사 연구영역의 접목(McGuire et al. 2013)이라는 점과 감사시간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데이터의 사용을 통해 감사인의 역할을 검증하였다는 점에 있어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최근 감사업무의 저가수임화 현상으로 인해 감사인이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피감사 회사에 대한 비감사서비스 업무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관련 업무의 수임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대표적인 비감사서비스 업무인

세무자문업무와 외부감사인과의 관련성은 반드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감 사회사의 조세회피 전략에서 외부감사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한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정연 · 고종권. 2014.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9권 제1호 : 147-183.
- 강정연 · 김영철. 2012.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세무학연구 제29권 제2호 : 37-67.
- 고윤성 · 김지홍 · 최원욱. 2007.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4권 제4호 : 9-40.
- 구자은. 2013.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정도의 측정”. 회계저널 제22권 제2호 : 145-168.
- 권수영 · 김문철. 2001. “감사보수의 결정요인과 감사보수체계 변화로 인한 효과분석”. 회계학연구 제26권 제2호 : 115-143.
- 나종길 · 최기호. 2005. “회계감사인의 산업별 전문성이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 제41호 : 261-297.
- 박승식 · 장지인 · 정길채 · 배성태. 2006.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4권 제1호 : 213-241.
- 박종국 · 홍영은. 2009.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세무학연구 제26권 제1호 : 105-135.
- 류승우. 2010. 감사시간과 내부심리시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4) : 1-34.
- Balakrishnan K., J. Blouin., W. Guay. 2011. Does tax aggressiveness reduce financial reporting transparency? *Working paper*.
- Blaylock, B., T. Shevlin and R. J. Wilson. 2012. Tax avoidance, large positive temporary book-tax differences, and earnings persistence. *The Accounting Review* 87(1) : 91-120.
- Caramanis, C. and C. Lennox. 2008. Audit efforts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5 : 116-138.
- Chen, K. P. and C. Chu. 2005. Internal control vs. external manipulation : A model of corporate income tax evas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36 : 151-164.
- Chen, S., X. Chen, Q. Cheng and T. J. Shevlin. 2010. Are family firms more tax aggressive than non-family firm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5 : 41-61.
- Craswell, A. T., J. R. Francis and S. L. Taylor. 1995. Auditor brand name reputation and industry specializ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0 : 297-322.
- DeFond, M. L., J. R. Francis and T. J. Wong. 2000. Auditor industry specialization and market segmentation : Evidence from Hong Ko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9(1) : 49-66.
- Desai, M. 2005. The degradation of reported corporate profi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9 : 171-192.

- Desai, M. and Dharmapala, D.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 145–179.
- Desai, M. and Dharmapala, D. 2009.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 : 537–546.
- Dhaliwal, D. S., Huang, S. X., Moser, W., Pereira, R. 2011.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he level and valuation of firm cash holdings. *Working paper*.
- Dunn, K. and B. Mayhew. 2004. Audit firm industry specialization and client disclosure quality.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9(1) : 35–58.
- Dyreng, S. D., M. Hanlon and E. Maydew. 2010. The effects of executives on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5(4) : 1163–1189.
- Fiolleau, K., Hoang, K., Jamal, K., Sunder, S. 2009. Engaging auditors : Field investigation of courtship. *Working paper. University of Alberta and Yale University*.
- Frank, M. M., Lynch, L.J., Rego, S. O. 2009. Tax reporting aggressiveness and its relation to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84 : 467–496.
- Francis, J. 1984. The effect of audit firm size on audit prices : A study of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 : 145–157.
- Hanlon, M., Heitzman, S. 2010.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 : 127–178.
- Hribar, P. and D. W. Collins. 2002. Errors in estimating accruals : Implications for empirical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4(2) : 105–134.
- Jensen, M. C., W. H. Meckling. 1976. Theory of the firm :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4) : 305–360.
- Kim, J. B., Y. Li., L. Zhang. 2011. Corporate tax avoidance and stock price crash risk : Firm-level analy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00 : 639–662.
- Kothari, S. P., A. J. Leone and C. E. Wasley. 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 163–197.
- Krishnan, G. V. 2003. Does Big 6 auditor industry expertise constrain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Horizons* 17(Supplement) : 1–16.
- Lennox, C. 2005. Management ownership and audit firm siz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2(1) : 205–227.
- Manzon, G. and G. Plesko. 2002. The relation between financial and tax reporting measures of income. *Tax Law Review* 55 : 175–214.
- Mayhew, B. W. and M. S. Wilkins. 2003. Audit firm industry specialization as a differentiation

- strategy : Evidence from fees charged to firms going public.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2 : 33–52.
- McGuire, S. T., T. C. Omer, D. Wang. 2012. Tax avoidance : Does tax-specific industry expertise make a difference? *The Accounting Review* 87(3) : 975–1003.
- Mills, L. 1998. Book-tax differences and internal revenue service adjustmen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6(2) : 343–356.
- Niemi, L. 2002. Do firms pay for audit risk? Evidence on risk premiums in audit fees after direct control for audit effort.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ting* 6 : 37–51.
- Palmrose, Z. 1986. Audit fees and auditor size :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 : 97–110.
- Pittman, J. A. and S. Fortin. 2004. Auditor choice and the cost of debt capital for newly public firm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7(1) : 113–136.
- Rego, S. O. 2003. Tax-Avoidance activities of U.S. multinational corporation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0(4) : 805–833.
- Robinson, J., S. Sikes and C. Weaver. 2010. Performance measurement of corporate tax departments. *The Accounting Review* 85 : 1035–1064.
- Slemrod, J. 2004. The economics of corporate tax selfishness. *National Tax Journal* 57 : 877–899.
- Wilson, R. 2009. An examination of corporate tax shelter participants. *The Accounting Review* 84(3) : 969–999.

The Role of Auditors in Corporate Tax Avoidance

Seong Ho Bae* · Kwang Wuk Oh**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ole of external auditors in corporate tax avoidance (hereafter ‘CTA’). Specifically,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impacts of external auditors’ efforts on the CTA. Intuitively, the share-holders might enjoy their additional wealth through CTA by saving tax payments to the authorities. But the CTA would exacerbate agency conflicts and involve information asymmetries which are designed by managers. (Chen and Chu 2005 ; Hanlon and Heitzman 2010 ; Kim et al. 2011). With respect to the audit risk, these negative attributes of CTA might increase inherent risk and control risk. So it is expected that the external auditors would increase their efforts to decrease clients’ CTA. But the tough audit market situation forced the external auditors to make a profit and as a result the independent auditors might play an important role in clients’ CTA. In other words, the auditors would make an efforts to increase clients’ CTA for maintaining a friendly relationship. So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audit efforts w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negative points of CTA or economic perspectives of auditors.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solve the ambiguous question with Korean data.

For the empirical test, 4 kinds of CTA measurements (i.e., GAAP ETR, CASH ETR, DD_BT D, BT D) are adopted to measure clients’ level of CTA and the actual audit hours and estimated abnormal audit hours are used to proxy the audit efforts. With 2,898 KOSPI firm-year observations from 2001 to 2010, we found that the level of clients’ CTA increased when the external auditors’ efforts increasing. And additional analysis supported our main results. The results suggest that in the CTA regime, the economic incentives of external auditor are as important as that of monitoring role.

〈Key words〉 Corporate tax avoidance, audit hours, abnormal audit hours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hobae@knu.ac.kr,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Korea University(Sejong Campus), avnini92@korea.ac.kr, Corresponding Author